

수원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단5206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우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준홍

변 론 종 결 2023. 11. 1.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2022. 12. 30.자 20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학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전자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는 질병진단관련 시약 및 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5. 30. C에게 투자할 목적으로 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C를 상대로 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2714)을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2019. 1. 31. 'C는 원고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6.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후 C는 2019. 11. 28. 원고에게 위 판결금의 일부인 2억 5,000만원을 변제하였다.

마. 그후 C는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무가 남아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2022. 12. 30. 피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여(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고 함)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을 할 당시 C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무실인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대한 월차임을 2022. 5. 16.부터 미납하고 있었고, 소속 직원인 F, G, H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22. 10. 28. 및 2022. 11. 23. 각 체불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대지급하고 이를 C에게 청구하고 있었다.

[증거 : 갑 1 내지 11호증, 증인 I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C가 피고에게 2억원을 지급한 2022. 12. 30. 당시 C는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무실 차임도 장기연체한 상태였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을 한 상태로서 채무초과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을 하는 경우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2) 살피건대, 을 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I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3. 14.경 C와 사이에 진단키트 개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C가 발행하는 10억원의 전환사채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C에게 10억원을 지급한 사실, 그후 C가 위 업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22. 7. 1.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7656호로 위 10억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조정사건인 같은 법원 2022머596588호 사건에서 2022. 11. 17. ‘C는 피고에게 10억 1,000만원을 지급하되, 2022. 12. 31.까지 2억원,

2023. 3. 13.까지 3억원, 2023. 5. 13.까지 5억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갈음결정이 내려졌고, 위 조정갈음결정은 2022. 12. 10.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후 C는 위 조정갈음결정에 따라 2022. 12. 30. 원고에게 2억원의 이 사건 지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업무협약에 따라 10억원을 지급하였다가 이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C는 피고에게 10억 1,00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조정갈음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어 그 조정갈음결정에 따라 C가 우선 2억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C가 이 사건 지급을 한 것은 C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원고는 자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변제기가 더 빠르고, 자신의 채권의 지연이자율(연 15%)이 피고의 채권의 지연이자율(연 12%)보다 더 높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C가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의 채권을 변제한 것은,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이 C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